

I. 다문화가족 현황

1. 다문화가족의 의미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❶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함.
- ❷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됨.

다문화가족의 형태

가정의 형태	가정 형태별 자녀의 유형
국제결혼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자녀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자녀
기타 이주민가정	유학생,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자녀

2. 결혼이민자 통계(행정안전부 - 2008. 5)

국제결혼이주민 현황

결혼 이민자												자녀현황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44,385	16,702	127,683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58,007	29,837	28,170						

* 국제결혼 이주자의 국적: 조선족(31.6%), 동남아(28.2%), 중국(22.1%), 일본(5.8%), 대만(3.3%) 등의 순.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지역별 현황

구분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제결혼이주자)	국적 취득자 (혼인귀화자)	국제결혼가정 자녀
합계	144,385	100.0%	102,713	41,672	58,007
서울	36,532	25.3%	24,048	12,484	7,500
부산	7,287	5.1%	5,424	1,856	3,057
대구	4,436	3.1%	3,424	1,012	2,254
인천	8,291	5.7%	6,068	2,223	3,054
광주	2,807	1.9%	2,094	713	1,608
대전	3,032	2.1%	2,196	836	985
울산	2,431	1.7%	1,797	634	1,068
경기	39,395	27.3%	27,770	11,625	11,131
강원	3,636	2.5%	2,665	971	2,590
충북	4,160	2.9%	3,015	1,145	2,584
충남	5,874	4.1%	4,284	1,590	3,421
전북	4,947	3.4%	3,565	1,382	4,283
전남	5,919	4.1%	4,501	1,418	4,902
경북	6,503	4.5%	4,894	1,609	4,235
경남	7,934	5.5%	6,057	1,877	4,601
제주	1,201	0.8%	904	297	734

* 국제결혼 이주자 거주지: 경기(27%), 서울(23.4%), 인천(5.9%) 등 수도권(56.3%) 거주 비율이 절반 이상 차지.

* 국제결혼 비율 상위 지역: 보은군(40.0%), 함평(37.6%), 임실(37.5%), 단양(37.3%).

국가별 다문화가족 현황

구분	총계	중국	베트남	대만	일본	필리핀	미국	몽골	태국	러시아	인	기타
총계	36,532	28,175	1,657	1,515	1,158	743	367	362	212	211	64	1,798
남성	6,754	4,409	57	739	174	63	347	26	10	19	8	902
여성	29,778	23,766	1,600	776	984	680	290	336	202	192	56	896
자녀	7,500	5,432	258	288	294	329	310	165	26	32	18	348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연령: 6세 이하(57.1%), 6세 이상~12세 이하(32.2%).

3. 기타 외국인 주민 관련 통계

- 국내 거주 외국인: 89만 1341명(1년 전보다 23.3% 증가). 전체 주민등록인구(4935만 5천153명)의 1.8%

-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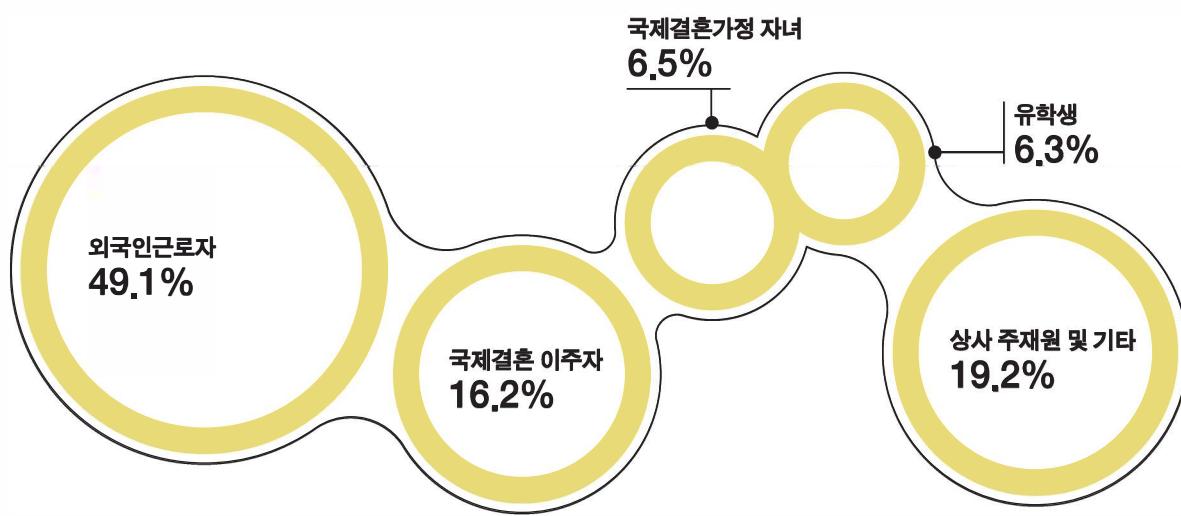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90일 이상 장기체류): 43만 7727명(49.1%)

국제결혼 이주자: 14만 4385명(16.2%)

국제결혼가정 자녀: 5만 80007명(6.5%)

유학생: 5만 6279명(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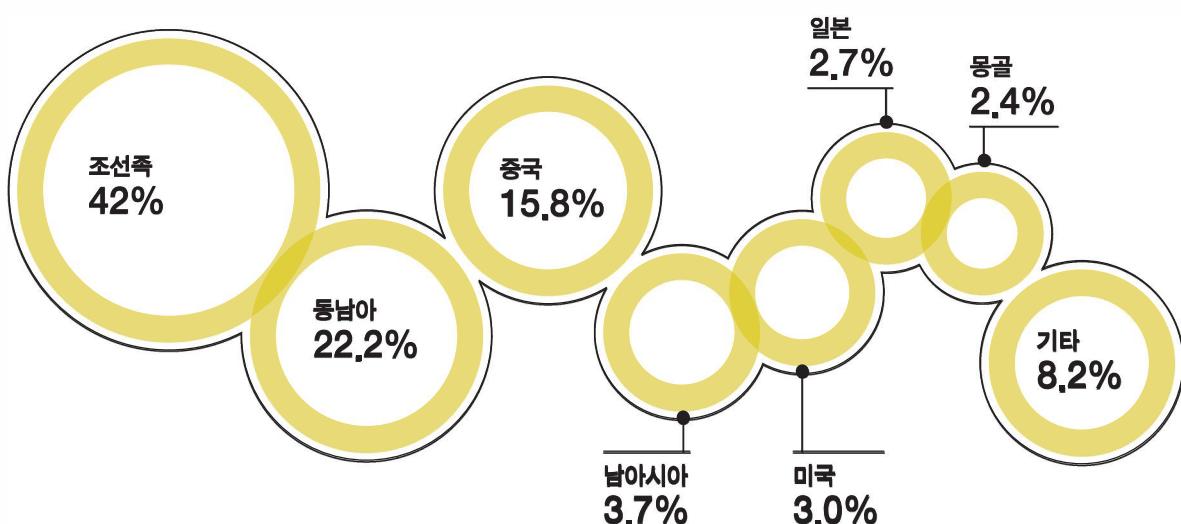
상사 주재원 등 기타: 17만 1104명(19.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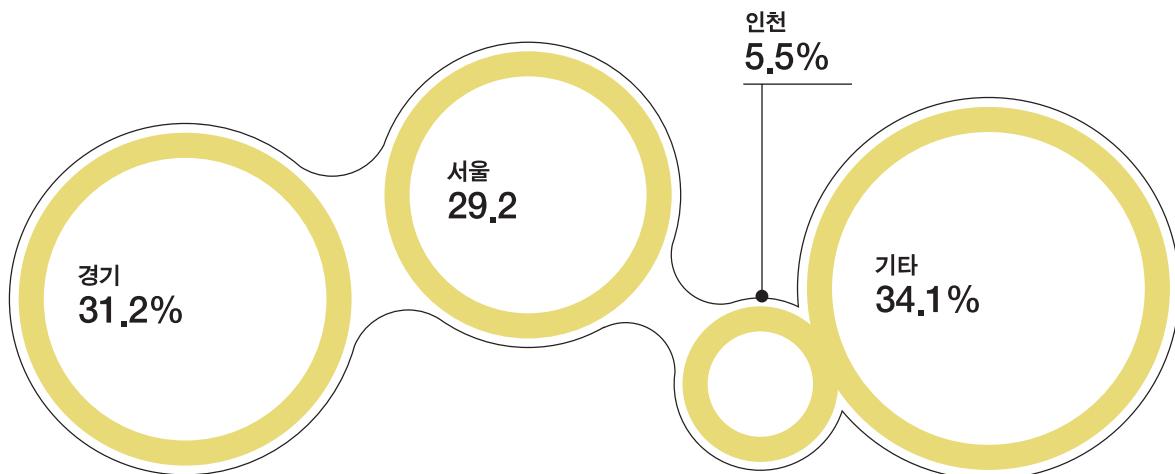
- **국적별 구분**

조선족(42%-37만 8345명), 동남아(22.2%), 중국(15.8%), 남아시아(3.7%), 미국(3.0%), 일본(2.7%),

몽골(2.4%), 기타(8.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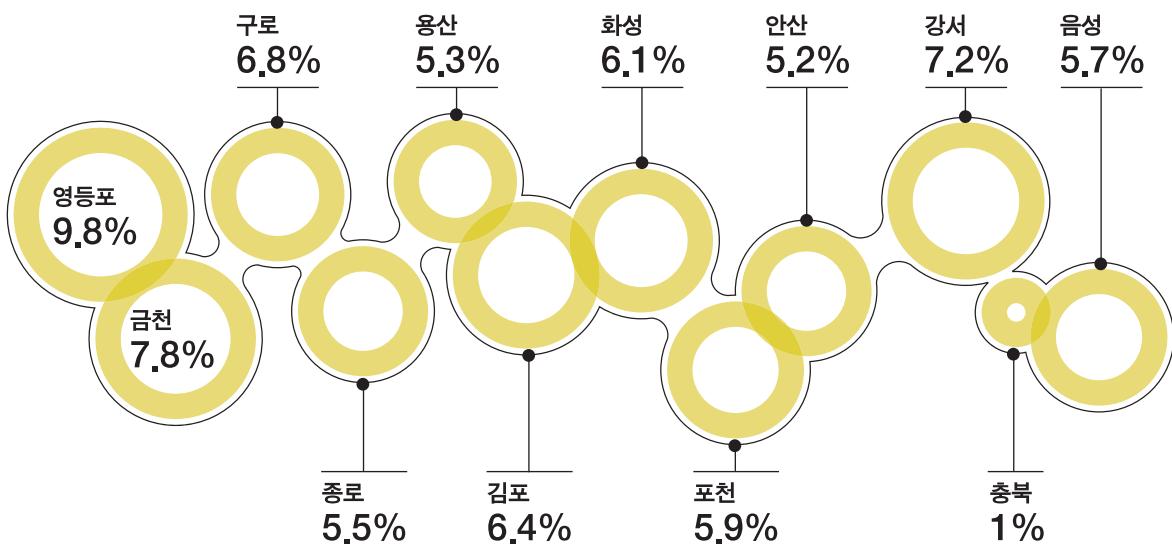


• 지역별 구분 : 경기(31.2%), 서울(29.2%), 인천(5.5%), 기타(34.1%) 순으로 수도권에 65.9% 집중.



•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 지자체

영등포(9.8%), 금천(7.8%), 구로(6.8%), 종로(5.5%), 용산(5.3%), 김포(6.4%), 화성(6.1%), 포천(5.9%), 안산(5.2%), 강서(7.2%), 충북(1), 음성(5.7%).



II. 다문화사회의 이해

1. 다문화사회의 의미

다문화사회란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우러져 상호간에 다른 인종과 민족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 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와 책임을 향유하는 사회를 뜻함. 즉, 구성원 상호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를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음. 다민족사회 또는 다인종사회 등으로도 표현함.

2.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보면 가깝게는 중국이 오랫동안 다인종·다민족·다문화사회를 유지해오고 있고 멀리는 미국이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구 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을 최고의 선으로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여 오고 있음. 이밖에 소련, 동유럽,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인종사회로서 유지되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서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켜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다인종·다민족화와 이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 사회 현상,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조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시급함.

아직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유입에 따른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 증가에 따른 인권보호 문제 및 사회갈등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3. 다문화주의 정책 유형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구조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과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공존의 틀**을 만들려는 기획임. 하지만 각 사회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 실현 방법이 다르게 나타남.

- ❶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같은 **이민국가**의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수밖에 없음. → 다문화주의는 다양성 속에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찾고 국민통합으로 사회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역할을 함.
- ❷ 장기적인 **외국의 노동자 유입이나 소수민족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각종 제도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종종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소수민족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남.
→ 소수자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를 통해 제도적·법률적으로 차별구조를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함.
- 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도**가 국가수준을 넘어 시민사회, 개인 수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비가 강구되어야 함. 그래야만이 다문화사회가 심화되었을 때 공존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

4. 다문화주의 실현 모형

- ❶ **국가주도 다문화주의:** 다문화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안과 집행이 대부분 국가 업무에 속함. 이 모형이 보편화되어 있는 까닭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임. 국가에 의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주요 대상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임. 국가는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 외

국인들을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함.

② **시민사회주도 다문화주의:** 국가주도로 만들어진 다문화주의 정책이 실제로 모든 외국인에게 균등히 적용되지는 않음. 사회적 약자로서의 외국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국가가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즉, 시민사회는 국가주도의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다문화주의를 내재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③ **협력적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역할분담을 통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의 서비스는 자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배려의 허점이 생기기 마련임. 따라서 지역에 터한 시민사회의 보충 기능이 필요함. 또한, 시민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은 국가가 보충해줌으로써 외국인 지원서비스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 물론, 협력적 다문화주의 모형에서는 정책의 대상자인 외국인의 협력도 필요함. 즉,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서 **외국인의 적·간접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문화사회 정책과 활동

구분	정부의 다문화정책	시민사회의 다문화활동
목표	•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 (다양한 국익적 차원의 사회통합 관리)	• 내국인과 이주민의 더불어 살기 (생존권과 인권 보호에 초점)
행위 주체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정책 및 사업 대상	• 합법적 외국인(합법적 단기체류 외국인, 국제결혼 이민 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귀화 외국인, 난민 등).	• 합법적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
주요 추진 방향	• 외국인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 • 우수외국인력 유치 지원 • 국민의식개혁	• 외국인의 생존권과 인권 보장 •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성 증진 • 이주노동자 / 결혼이민가족 역량강화
주요 사업	•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 국민의식개혁 교육	• 한국어 교육 · 역량강화프로그램 • 법제도 개선운동 · 다문화 축제
문제	• 전체 외국인의 1/4 가량을 차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배제 • 표준화된 획일적 정책으로 소수집단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 • 정부부처 간 중복투자와 단기적 지원 • 순혈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함	• 재정 · 인력 · 시설의 부족으로 내실 있고 지속적 인 활동을 하기 어려움 •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NGO로서의 위상과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진보적인 주장(불법체류자의 전면적 합법화)으로 국민적 반발 가능성 있음

III.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정부 차원: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전략 사업(보건복지가족부 위탁)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교육사업 연구개발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교육 교재 개발 - 방문교육지도사 보수교육교재 개발 - 방문교육지도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방문교육사업 관리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가이드북 개발 및 보급 - 사업설명회 개최 - 가족사업실적관리시스템(DB) 구축 및 관리 • 방문교육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종사자교육, 종사자행정실무교육, 역량강화교육 등 • 방문교육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기관 현장점검 - 평가 및 평가회 - 사업실적 관리 • 방문교육사업 전문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교육지도사 양성 및 보수교육 • 기관연계 및 사업보고회
2. 결혼이민자 영농기술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종사자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오리엔테이션 - 운영기관 실무자 워크숍 • 영농기술교육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교육 관련교재 한국어 개발 및 다국어(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번역본 보급 - 농촌경제 활성화지원방안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운영기관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현장점검 및 평가 - 사업실적관리 • 기관연계 및 사업보고대회
3.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언어지도사 양성 및 보수교육 • 사업설명회 • 전문가자문회의 • 사업평가지표 구축 및 평가 • 결과보고서 제작 • 언어지도사 회의 및 슈퍼비전 •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홍보
4.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매거진 발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매거진 〈Rainbow〉 발행
5.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계

시민사회 차원 다문화운동 : [군포시] ‘아시아의 창’ 사업(2008년 창립)

구분	사업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정서 지원사업 (자조모임, 문화교육, 멘토링, 동아리활동, 행사참가) 	
사업내용	고충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금, 퇴직금, 산재 상담, 의료지원 및 상담 결혼이민자를 위한 의료지원 및 법률상담 의료보험에 없는 이주민을 위한 의료공제회 운영
	자기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찾아가는 사랑방 교육: 공단, 집 방문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역사 탐방 이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아시아와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와 만나는 콩나물도서관 운영 - 각국 도서 비치 한국청소년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이주민을 위한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 정책모니터링과 연구사업 이주민 실태조사 지역사회와 이주민이 함께하는 작은 축제 인권, 평화를 위한 캠페인

시민사회 차원 다문화가족 운동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사업구분	특화사업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정서 지원사업 (자조모임, 문화교육, 멘토링, 동아리활동, 행사참가)
가족통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강화 지원사업 (정보화교육, 직업교육,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원어민강사 양성교육, 통번역사양성교육, 기타)
가족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다문화교육, 다문화축제, 다문화캠페인, 기타 다문화인식개선사업)

IV. 다문화가족 교화를 위한 제언

1. 인식적 차원: 한국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마

다문화주의의 수용을 위해서는 **한국적 특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 한국은 이민국가가 아니고 민족국가라는 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크다는 점, 혈통적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점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온정적인 주장은 국민 다수의 반발을 일으켜서 오히려 외국인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국익증진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다문화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임.

즉, 1단계에서는 모든 외국인의 기본적 성격의 인권보장을 충실히 하고 특히 여성, 자녀, 난민인정자 등 소수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2단계에서는 숙련 기능인력의 장기체류와 정주를 허용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함. 즉,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장기 거주자에 대해 주민권(denizenship)을 부여해야 함. 3단계에서는 이민과 귀화의 문턱을 낮추고 이민자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해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즉,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 실천과 국민정체성의 기반을 혈통과 종족이 아닌 시민권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을 강화해야 함.¹⁾

2. 실천적 차원: 다문화가족 지원 체계 확장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사회적 소수자로서 다문화가족은 인적?물적 차원에서 기존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전국 각지에 조직적 자원봉사 체계를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종교계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영역임**.

한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 관련 서비스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담당공무원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만의 노력만으로는 다문화가족이 치해있는 서비스 욕구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결국 다양한 역량을 갖춘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통해 해결해야 함.

즉, 종교계는 지역사회의 친근한 이웃으로서 다문화가족의 대화 상대가 되고, 한국어 교육과 문화 그리고 생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이러한 노력은 그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주체적 태도를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임.

1)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집 2호.

외국인 지원기구 및 단체 현황(행안부 2008)

구분	공공기관	종교단체	민간단체	합계
서울	25	3	12	40
부산	2	0	25	27
대구	4	2	20	26
인천	1	7	9	17
광주	1	3	29	33
대전	2	0	8	10
울산	2	1	4	7
경기	14	34	65	113
강원	17	0	33	50
충북	2	1	25	28
충남	3	0	23	26
전북	4	3	43	50
전남	11	3	21	35
경북	5	4	34	43
경남	9	2	38	49
제주	0	0	10	10
합계	102	63	399	564

* 외국인 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 작년 346개 -> 올해 564개로 증가.

3. 종교적 차원: 다문화사회를 선도하는 교리 실천

2007년 이미 100만 명을 돌파한 국내 체류 외국인(단기체류자 포함)의 국적은 총 195개국이고 국제결혼자의 출신국은 무려 117개국에 이르는데 이들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음. 동일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이주노동자 지역들에서는 예외 없이 기독교 계열 NGO가 활발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필리핀 출신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 이슬람 지역 출신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이슬람중앙회, 미얀마나 네팔 출신은 불교계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고 있음.

한편,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산포되어 있어 조직화가 힘들고, 이주자들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비해 교회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개 교당 별로 시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관리**, 언어 능력과 상담 능력을 구비한 전문 인력의 육성, 문화적 거부감 없는 교리 관련 콘텐츠의 개발 등의 노력 등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의 세계’를 향한 주제 회상의 미래도 기약할 수 있을 것임.

한국복음전도

 원불교 정책연구소 tel 063-850-3382 fax 063-850-3383
570-754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불교 중앙총부